	강의중점전임교원 인사규정	제정일자	2016.12.12
		개정일자	2018. 3. 5
		페 이 지	1-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충청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강의중점전임교원(이하 "강의중점교원"이라 한다)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강의중점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8. 3. 5)

1. 채용형 강의중점교원: 최초임용시 학위, 비학위과정 교육 및 지도를 위하여 채용된 전임교원
2. 전환형 강의중점교원: 본교 전임교원 중 소속학과 모집중지로 인하여 전환된 교원

제3조(자격) 강의중점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교원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.(개정 2018. 3. 5)

제4조(임무) ① 강의중점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18. 3. 5)

1. 학위, 비학위과정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
2. 강의와 관련된 연구 및 연수
3. 그 밖의 업무

② 삭제 (2018. 3. 5)

제5조(책임시수) 강의중점교원의 책임시수는 [별표1]과 같이 시행한다.

제6조(평가) 강의중점교원의 평가는 학부(과) 및 교원성과평가규정에 의한다.(개정 2018. 3. 5)

제7조(재계약임용) 강의중점교원의 재계약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.

제8조(승진임용) 강의중점교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.

제9조(임용기간) ① 채용형 강의중점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 임용한다.

② 계약기간이 만료된 채용형 강의중점교원은 계약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계약 임용될 수 있다.

제10조(보수) ① 채용형 강의중점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계약한다.

② 전환형 강의중점전임교원의 보수는 연봉제 또는 본교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한다.(신설 2018. 3. 5)

제11조(세부사항)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제목개정 2018. 3. 5]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강의전담전임교원임용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로 폐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12월12일 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강의중점전임교원임용규정은 2016년 12월 11일부로 폐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5일 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강의중점교원의 책임시수

구 분	책임시수 (학위·비학위)	비 고
채용형 강의중점교원	12	• 초과강의는 책임시간 외 6시간 이내 인정 • 비학위과정은 초과강의 제한 미적용
전환형 강의중점교원	12	